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이수 의무화〉
■ 김준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575호)

2025. 6.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준혁 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2. 28.
3. 회부연월일 : 2025. 3.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으로 7개 과목(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을 규정하고, 응시자는 이 중 1개 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목별로 학습량, 시험 난이도, 표준점수의 차이에 따른 유불리가 있어 특정 과목에 응시자가 편중되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일선 법학전문대학원은 물론 변호사협회, 교육부, 법무부 모두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상황임.

제도개선의 방법으로는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의 폐지 또는 Pass/Fail로의 전환 및 학점이수제의 도입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변호사시험법」을 개정하여 선택과목에 대한 Pass/Fail 제도를 도입하고, 이와 더불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학점이수제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주요내용

- 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점에 「변호사시험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학점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및 제3항).
- 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강의 개설 및 수강은 2학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정하고 경과규정을 둠(안 부칙 제1조부터 제3조까지).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의 이수에 필요한 학점에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학점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19조(학점) ① (생략) <u><신설></u> <u><신설></u> <u>②·③</u> (생략)	제19조(학점) ① (현행과 같음) <u>② 제1항에 따른 석사학위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점에는 「변호사시험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학점이 포함되어야 한다.</u> <u>③ 제2항의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학점의 인정범위, 최소 이수 학점, 이수 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④·⑤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u>

1. 개요 및 현황

현재 변호사시험의 시험과목¹⁾은 공법, 민사법, 형사법과 전문적 법

1) 「변호사시험법」 제9조(시험과목) ①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2.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3.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4.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
-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를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이하 “선택과목”이라 함)²⁾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중 선택과목에 대한 편중현상이 지적되고 있음. 제1회부터 제12회까지 변호사시험에서의 선택과목 응시 현황을 보면, 첫해를 제외한 모든 해에 국제거래법에 응시생들이 편중되어 있으며, 그 외 국제법, 환경법에 최근 응시생들이 편중되어 있음.

< 제1회~제12회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시험 현황 >

연도	구분	국제법	국제 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 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합계
2012	응시자	94	413	516	59	82	228	273	1665
	합격자	71	346	453	54	77	210	240	1451
2013	응시자	60	804	405	45	88	285	359	2046
	합격자	38	584	296	36	76	222	286	1538
2014	응시자	63	1032	359	33	61	225	519	2292
	합격자	37	669	240	25	41	163	375	1550
2015	응시자	64	1116	319	49	52	192	769	2561
	합격자	35	631	197	32	32	131	507	1565
2016	응시자	95	1240	405	57	73	199	795	2864
	합격자	46	625	248	38	44	111	469	1581
2017	응시자	181	1397	439	71	80	270	672	3110
	합격자	92	695	256	45	35	159	318	1600
2018	응시자	241	1404	415	81	95	309	695	3240
	합격자	113	636	237	48	39	173	353	1599
2019	응시자	236	1439	334	108	114	378	721	3330
	합격자	93	678	192	66	56	203	403	1691
2020	응시자	303	1224	242	99	115	427	906	3316
	합격자	140	590	132	59	51	237	559	1768
2021	응시자	298	1147	203	103	121	386	898	3156
	합격자	141	584	104	68	60	223	526	1706

③ 시험의 각 과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제 범위를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시험과목을 신설·폐지하거나, 제3항에 따라 시험과목의 출제 범위를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시험 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2)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2022	응시자	348	1291	169	87	98	336	868	3197
	합격자	139	699	96	56	33	185	504	1706
2023	응시자	382	1559	138	71	103	258	744	3255
	합격자	160	844	81	39	40	136	425	1725

이러한 선택과목 쏠림 현상은 단순히 시험의 공정성 저해 문제뿐만 아니라, 법학 교육의 다양성 저해, 인기 과목으로의 인력, 자원 편중으로 인한 비인기 과목의 역량 악화 등을 야기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해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변호사시험에서의 선택과목 시험을 Pass/Fail 시험으로 전환³⁾하고, 선택과목에 대한 학점이수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2. 학점이수제 도입의 타당성 검토

선택과목 시험을 P/F로 전환하고, 선택과목에 대해 학점이수제를 도입하는 것은 선택과목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선택과목을 이수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또한,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이 교육이 변호사시험에 치중되어 운영됨에 따라 변호사시험 과목 외의 법학분야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학생의 선택과목 이수를 의무화할 경우 선택과목 분야가 법학전문대학원 내에서 유지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만, 학점이수제 도입을 법률에 규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3) 의안번호 제2208601호, 김준혁 의원 대표발의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첫째, 현행 법령은 교육과정 운영 및 학위 수여에 대해서 학칙이 정하도록 규정⁴⁾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⁵⁾하고 있음. 선택과목 이수 의무화에 대한 내용도 법학전문협회의 협의를 거쳐 각 대학원에서 학칙으로 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개정안 제19조제2항의 “「변호사시험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이라는 규정은 해당 조항의 전체 문맥을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이 경우 변호사시험 응시자가 본인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수한 과목만 선택과목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귀결될 수 있음. 이와 더불어 교육학적으로 교육과정이 평가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한국법학교수회의 의견을 고려했을 때,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이를 「변호사시험법」에서 인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셋째, 개정안 부칙⁶⁾에 따르면, 개정안이 공포된 해에 입학한 사람부

4) 「고등교육법」 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 ①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학위의 수여)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대학원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해당 과정의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5) 「대한민국헌법」 제31조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6)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8565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시작되는 학년도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수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적 중인 사람(이 법을 공포한 해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이수학점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을 공포한 해에 법학

터 학점이수제가 적용되나, 개정안의 효력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시작되는 학년도부터 발생하게 됨. 이 경우 공포된 해에 입학한 학생은 첫 해에 수강과목을 정함에 있어 혼동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 또한, 학점이수제의 구체적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시행령 준비에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관련기관 의견

교육부는 대학(원)의 교육과정 및 학위수여는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령 체계와 달리, 법전원의 선택과목만 법으로 정함에 따른 대학 자율성 침해 논란 및 전체 학사과정 왜곡이 우려되고, 선택과목 개설이 법령에 따른 최소요건 충족에만 함몰 될 가능성, 학생들이 선택과목을 신청하고 수업중 다른과목을 공부할 가능성, 대학별 교육수준과 질에서 편차 발생 등 부작용이 우려되며, 선택과목 필수 개설은 교원확보·수업시수·시험준비 유불리 등과 긴밀하게 연결되므로, 법전원 교원·선택과목군 관련 학회·법전원 학생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법무부는 특정과목 편중 해결 등을 위한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학점이수제 전제 P/F 방식 시험은 선택과목 교육 부실화 우려가 있으므로 다양한 시험 방식 및 시험 과목 변경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요하며, 2008년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을 정할 당시 법전원, 대법원, 대한변협, 한국법학교수회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으므로, 시험 방식 변경에 대해서도 유관기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부칙에 '개정 규정은 이 법을 공포한 해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이수학점에 대한 적용례를 두고 있는데, P/F 방식 선택과목 시험 시행 시점과 학점이수제 시행 시점의 통일 필요성 및 법전원의 학사 관리, 기존 법전원생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보호 등 고려할 때 학점이수제 시행 시점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에 포함되지 않은 기초법 분야과목의 수업을 보다 충실히 운영하고, 외국법 교원이 재직 중인 일부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기초법 과목에 외국법을 포함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는바,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뿐만 아니라 기초법(외국법 과목을 포함한다)과목도 포함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제시함.

한국법학교수회는 현재의 법전원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목표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변호사시험 과목 외의 법학분야는 교육과 연구 모두 위기에 직면하였고, 법전원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초교육이 토대가 되어야 하나 기초법학교육이 현실적으로 전무하였으며, 기초법학분야와 전문적 법률분야의 범위에 관한 논쟁이 입법지연을 촉발할 경우에 대비하여, 시행령 입법시 양 분야의 구분없이 과목을 포괄적으

로 논의하는 방법을 제안함. 또한, 「변호사시험법」 제2조는 “변호사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의 유기적 연계”를 명문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이 평가보다 선행하는 것이 교육학적으로 바람직하므로 “「변호사시험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이라는 표현은 삭제할 것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188